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 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달서구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동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의 선임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의 수립
2. 사회복지사업상호간의 조정·균형발전
3.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 시행
4. 사회복지 시설의 건립
5. 기타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련 행정기관공무원
3.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
4.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분과위원별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을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서류비치) 안건의 심의 의결때에는 심의의결서에 참석자 전원이 날인하며,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 위원회의 정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위원)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여자등 법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보호의 의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알선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 관계단체와의 협력

4.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⑤ 복지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장은 복지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거나 정치활동 기타 직무와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복지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부 칙

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社會福祉事業法 [1992.12.8
法律第4531號全文改正]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規定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질을 기함으로써 社會福祉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① 이 法에서 "社會福祉事業"이라 함은 다음의 法律에 의한 보호·善導 또는 福祉에 관한 사업과 社會福祉相談·浮浪人保護·職業傳導·無料宿泊·地域社會福祉·警察福祉·再嫁福祉·社會福祉館運營·精神疾患者 및 完治者 社會復歸에 관한 사업등 각종 福祉事業과 福祉施設의 운영 및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生活保護法
2. 兒童福祉法
3. 老人福祉法
4. 障碍人福祉法
5. 母子福祉法
6. 嬰幼兒保育法
7. 優落行爲等防止法

② 이 法에서 "社會福祉法人"이라 함은 社會福祉事業을 행할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또는 그 聯合體를 말한다.

③ 이 法에서 "社會福祉施設"이라 함은 社會福祉事業을 행할 目的으로 設置된 施設을 말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社會福祉事業에 관하여는 第2條第1項 各號의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條(福祉增進의 責任)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②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社會福祉事業을 경영하는 者는 社會福祉의 惠澤을 필요로 하는 者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相談·作業治療·職業訓練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5條(社會福祉委員會) ①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와 서울特別市·直轄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社會福祉委員會를 둔다.

② 保健社會部에 두는 社會福祉委員會의 組織·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市·道 및 市·郡·區에 두는 社會福祉委員會의 組織·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6條(福祉委員) ① 社會福祉事業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邑·面·洞에 福祉委員을 둔다.

② 福祉委員은 그 관할地域안의 低所得住民·兒童·老人·障礙人·母子家庭·要保護女子 등에 대하여 항상 그 生活狀態 및 家庭環境등을 파악하고, 社會福祉에 관하여 필요한 相談과 指導를 행한다.

③ 福祉委員과 社會福祉關係法令에 의하여 둔 社會福祉關係要員 및 關係行政機關은 상호協力하여야 한다.

④ 福祉委員은 名警職으로 하되,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⑤ 福祉委員은 資格·職務·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指導訓練)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이 法 기타 社會福祉關聯法律의 施行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과 社會福祉事業에 종사하는 者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와 訓練을 행하거나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訓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8條(社會福祉士資格證의 交付등)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社會福祉에 관한 專門知識과 技術을 가지 者에게 社會福祉士의 資格證을 交付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士의 資格·等級 및 그 資格證의 교부절차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社會福祉士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9條(社會福祉士의 採用) 社會福祉法人 및 社會福祉施設을 設置·運營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福祉士를 그 從事者로 採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0條(社會福祉專擔公務員) ① 第2條第1項에서 정하는 事業에 관한 사업을 擔當하게 하기 위하여 市·郡·區 및 邑·面·洞에 社會福祉專擔公務員을 둘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專擔公務員은 社會福祉士의 資格을 가진 자로 하며, 그 任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福祉事務専擔機關의 設置) ① 第1條第2項에서 정하는 事業에 관한 事務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市·郡·區에 福祉事務를 專擔하는 機關을 따로 設置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福祉事務専擔機關의 業務의 범위·組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2章 社會福祉法人

第12條(法人의 設立許可) ① 社會福祉法人(이하 "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하고자 하는 著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法人的 목적사무의 범위가 2개 시·도이상에 걸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13條(定款) 法人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 的
2. 명 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事業의 종류
5. 財產 및 會計에 관한 事項
6. 責務에 관한 사항
7. 會計에 관한 사항
8.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变경에 관한 사항
10. 存立時期와 解散事由를 정할 때에는 그 時期와 사유 및 殘餘財產의 처리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1984. 2. 28 대통령령제11365전문개정]

개정 1987. 4. 10 대통령령 제12139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990. 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1. 8. 14 대통령령 제13450호
1993. 6. 9 대통령령 제1390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3. 6. 9〉

1.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의 수립
2. 사회복지사업 상호간의 조정
3.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시행
4.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内外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심의관이 된다.〈개정 91. 8. 14〉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합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소속직원중에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복지위원)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구·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개정 93·6·9〉

1. 당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3·6·9〉

④ 복지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90·12·1 93·6·9〉

1. 관할지역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여자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보호의 의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알선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 관계단체와의 협력

4.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